

명지학원정관

1-1-1

(최종 개정일 2026.05.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교육방침)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배와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한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하여,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신설 2026.05.22.)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명지대학교
2. (삭제 2014. 6.16)
3. 명지전문대학
4. 명지고등학교
5. (삭제 1997. 3. 1)
6. 명지중학교
7. (삭제 1997. 3. 1)
8. 명지초등학교
9.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명칭변경 1999.1.12)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361-20번지에 둔다.(개정 2002.9.17, 2007.4.2, 2009.3.9)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7.11.23, 개정 2008.5.13, 2012.6.29)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1.23)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10.30)

제 3 절 예산, 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21조 (삭 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 9인(이사장 1인 포함)(개정 1993.4.12, 1997.6.7, 2000.12.6, 2004.6.3, 2005.3.10., 2006.6.16., 2016.3.26., 2018.6.25., 2020.06.23., 2021.08.05., 2022.12.27.)

감 사 : 2인(개정 1993.4.12)

②제1항의 임원중 개방이사의 수는 3인으로 한다.(신설 2006.10.30)

③제1항의 임원중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5.9.29, 개정 2009.3.9)

1. 이사장 1인

2. 상근이사 1인

④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2005.9.29)

제22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2006.10.30)

제2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 5년

2. 감 사 :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개정 2006.10.30)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1997.3.1)(개정 2006.10.30, 2015.7.23)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5.9.29)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각 규정을 위반한 때

2. 이 법인의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이 법인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때(개정 2006.10.30)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1993.4.12)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2.6)

②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7.12.6)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2.6)

④(삭제 2007.12.6)

제24조의3(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명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6)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6, 2009.3.9, 2014.6.16)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4인

- ③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7.12.6)
-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6.10.30, 개정 2007.12.6)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와 감사는 건전하고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야 하며,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개정 2015.7.23)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9.12.30,2006.10.30)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1997.3.1)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9.12.30)

⑤(삭 제)(2006.10.30)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신설 2006.10.30, 개정 2007.12.6)

⑦제6항의 감사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10.30)

⑧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신설 2015.7.23)

⑨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신설 2006.10.30, 항번호변경 2015.7.23.,개정2022.06.29.)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개정 1997.3.1, 2005.9.29)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제 2007.11.23)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상근이사가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11.30.)

③(삭제 2017.11.30)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 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6.10.30,개정 2007.11.23)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와 개최 및 의결 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 2006.10.30)

②이사회와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3.4.12, 2006.10.30)

③이사회와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4.3)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3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4.2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006.10.30, 개정2007.11.23)

제34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3.1)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0.30)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5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육기관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6.10.30)

제35조의3(평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9.16, 1999.1.12, 2006.10.30., 2009.3.9., 2018.6.25., 2018.12.18)

1. 교원 4인 (개정 2018.12.18.)
2. 직원 3인
3. 학생 2인 (개정 2018.6.25.)
4. 동문 1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개정 2018.12.18.)
 - 가. 학부모 1인
 - 나. 지역사회 1인

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4(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개정 1993.4.12)(제목 개정 2006.10.30)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개정 1993.4.12)

제35조의5(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6.10.30, 개정 2007.12.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6(운영규정) 평의원회 의원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0.30)

제 4 절 학교운영위원회(절 신설 2000.7.4)

제35조의7(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06.29.)

제35조의8(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단, 제1호는 자문한다.)(개정 2012.2.6., 2022.06.29.)

1. 학교 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아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2.2.6.,개정 2022.06.29.)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2.2.6.)

⑤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2.6)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학력신장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2.2.6)

⑦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2.6)

제35조의9(위원의선출)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개정 2012.2.6)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6)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2.2.6)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운영위원회규정에서 구성한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2.2.6)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개정 2012.2.6)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2.6)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신설 2012.2.6)

제35조의10(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35조의11(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5조의12(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13(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2.2.6)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제35조의12제3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35조의14(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35조의8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06.29.)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9.)

③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2.2.6)

제35조의15(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절 신설 2001.5.28)

제35조의16(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행알선업
2. 건설사업
3. 공중목욕장업
4.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개정 2009.3.9)
5. 의료사업(의료복지사업 포함)
6. 노인주거복지시설업(신설 2008.3.24)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주식회사 고려여행사
2. (삭 제)(2009.3.9)(신 설)(2012.12.17)(삭 제)(2014.6.16)
3. (삭 제)(2007.4.2)
4. (삭 제)(2007.4.2)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전조 수익사업체 사무소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식회사 고려여행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번지의 7호((개정 2002.9.17)
2. (삭 제)(2009.3.9)(신 설)(2012.12.17)(삭 제)(2014.6.16)
3. (삭 제)(2007.4.2)
4. (삭 제)(2007.4.2)

제39조(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단서 삭제 2007.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07.11.23)

제 5 장 해 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5.13)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8.5.13)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97.3.1, 2008.5.13)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43조(임용) (조명 변경 2016.12.21.)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신설 2016.12.21.)

②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유치원을 제외한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학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6.9.13, 1999.1.12, 2006.10.30, 2007.11.23., 2015.12.3., 2016.12.21., 2026.05.22.)

③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그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1.3.10., 항번호 변경 2016.12.21)

④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공개전형으로 하여 당해 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고등학교 이하 교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준용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중 강사에 관한 임용권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0.12.16., 2002.12.30., 2016.12.21., 2019.6.25., 2022.06.29., 2022.12.27.)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50조의4(정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2.6.29)

2. 급여

법인보수규정에 의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근무조건

주당강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 논문지도 ·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2.12.30.,2016.12.21)

1. 교 수 : 정년보장(개정 1998.1.20)
2. 부 교 수 : 5년부터 7년(개정 2009.8.24, 1998.1.20)
3. 조 교 수 : 3년
4. 삭제(2012.6.29)

⑥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02.12.30., 항번호 변경 2016.12.21)

⑦제2항 내지 제5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신설 2002.12.30.,2016.12.21)

⑧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전문대학의 경우 사무직원으로 임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 대학원장 · 학장(전문대학은 학부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15.7.23., 항번호 변경 2016.12.21)

⑨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조교 제외)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5.7.,2016.12.21)

⑩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06.10.30., 항번호 변경 2016.12.21)

⑪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휴 · 복직과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검임, 파견, 휴직과 이에 따른 복직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9.6.25.,2022.06.29.)

⑫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이하 이 정관에서 말하는 교원은 대학교육기관 강사를 제외한다.)(신설 2009.3.9., 2016.12.21.,2019.6.25)

제43조의2(교목) 학교에 교목을 두며 교목은 목사자격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신설 1999.1.12)

제43조의3(삭 제 2004.7.27)

제43조의4(기간제교원 임용) ①임용권자는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교원(이하 “기간제 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4.7.27., 2005.3.10.,2016.12.21., 2025.10.30.)

1. 교원이 정관 제4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

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위헌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개정 2012.6.29)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1999.12.30.)

③임용기간 3개월 이하의 기간제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용하고 이 사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25.10.30.)

제43조의5(전형결과 공개) ①초·중·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06.10.30)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기관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6., 2011.10.31., 2016.12.21., 2019.8.27)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5.7.23)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00.12.6)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개정 1996.3.1, 2015.7.23)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신설 1996.3.1, 개정 2007.11.23., 2012.4.3)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

을 입양(入養)하는 경우(신설 2019.8.27.)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08.5.13)
9. 기독교정신에 위배되는 소행이 있어 학교의 체면을 손상하였을 때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1996.3.1)
11.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에 출마하게 된 때(개정 1996.3.1)
12.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00.12.6)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 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신설 2000.12.6.)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9.6.25.)
15.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신설 2006.10.30., 2016.12.21., 개정 2019.6.25.)

②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전까지 교원의 직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신설 1996.3.1, 개정 2015.7.23)

③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교원의 학교의 장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1.3.10, 적용 2001.1.1, 개정 2011.10.31)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00.12.6, 개정 2012.4.3., 2016.12.21., 2019.8.27)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는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3.4.12., 2019.8.27)
2.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개정 2000.12.6)
4.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0.12.6)
5.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6.3.1, 단서개정 2000.12.6, 개정 2008.3.24.)
- 6의2. 제44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9.8.27.)
7. 제4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0.12.6)
8. 제44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그 기간을 3월 이내로 한다.
9.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6.3.1)
10.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의 휴직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까지로 한다.(신설 1996.3.1, 개정 2015.7.23)
11. 제44조 제1항 제12호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0.12.6)
12. 제44조 제1항 제13호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0.12.6)
13. 제44조 제1항 제14호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9.6.25.)
14. 제44조 제1항 제15호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6.10.30., 개정 2019.6.25)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단, 대학교육기관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0.31)

③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1993.4.12)

1.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은 교원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9.8.27.)

2.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은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3)

② 제4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0.30., 2019.6.25)

제48조(직위의 해제) (조명 변경 2017.2.22.)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02.1.9)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개정 2016.8.25.)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신설 2016.8.25.)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6.8.25.)
-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16.12.21.)
- ⑥제5항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8.25.)
- ⑧ (개정 2016.12.21., 삭제 2017.2.22.)

제48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본조 신설 2016.8.25.) ①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중인 때

②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제48조의3(면직의 사유) (본조 신설 2017.2.22.) ①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1993.4.12)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6.29)

제50조의2(명예퇴직) ①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개정 1996.9.13, 1998.5.14, 2000.12.6, 2002.5.20)

②제1항의 명예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5.20)

③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명예퇴직일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50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의4(정년) ①교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학교의 장(부총장, 대학원 장, 특수대학원장, 미래교육원장 포함)과 교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3.1, 1999.1.12, 1999.12.30., 2013.8.30., 2019.12.19)

2. 사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문대학의 부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3.9, 2015.4.7, 2015.7.23)

②정년 해당자는 정년 되는 학기말에 퇴직한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의 사무직원의 정년 해당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08.26.)

③법인 및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25년 이상 근속하고 공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5년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매 1년 단위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7.3.1)[본조 신설 1996.3.1]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유치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10.30., 2016.12.21., 2022.06.29.)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7.23)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06.10.30., 2015.7.23., 2016.12.21)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6.25.)
3.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교원에 경우에 한한다)·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은 학부장)의 보직 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3., 2019.6.25)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10.30)(개정 2013.2.18., 2015.7.23., 2019.6.25)

② 초·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5.7.23., 개정 2022.06.29.)

1.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항번호변경 2015.7.23., 개정 2016.12.21)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하되, 인사위원회의 정수는 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10.3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부총장 또는 교육지원처장(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1998.9.16, 1999.1.12, 1999.12.30, 2015.7.23)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4 관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명변경 2016.8.25.)①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유치원을 제외한다)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00.12.6, 개정 2008.9.8)

②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 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8.25.,2022.06.29.)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6인(신설 2016.8.25.개정 2022.06.2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3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신설 2016.8.25.,개정 2022.06.29.)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6.8.25.)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신설 2016.8.25.)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신설 2016.8.25.)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06.29.)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신설 2016.8.25.,개정 2022.06.29.)

3.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신설 2022.06.29.)

③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8.25.)

④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신설 2016.8.2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16.8.2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6.8.2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6.8.25.)
5. 제64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16.8.25.)

제60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조명변경 2019.12.19.) ①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9.)

1.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기타 공무원법 등의 법령 또는 본 법인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법인 및 각급학교 내외에서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②교원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신설 2019.12.19.)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06.29.)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8.25.)

제6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조 신설 2016.8.25.)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5조(징계의결)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②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③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항 번호 변경 2019.12.19.)

④임명권자가 제3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제65조의2에 따른 재심의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2019.12.19.)

⑤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고해야한다.(개정 2019.12.19.,2022.06.29.)

⑥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항 번호 변경 2019.12.19.)

제65조의2(사전통보 및 재심의 요구)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요구받은 교원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제65조 제3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개정 2019.12.19)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5년, 성 관련 범죄 및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2.6.29., 2015.7.23.,2022.06.29.,2023.08.29.)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관 재심위원회

제69조 내지 제82조 (삭 제 1993.4.12)

제 2 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직원은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 및 계약직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9.3.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하여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5.7, 2009.3.9)

③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09.3.9, 2022.2.22.)

제84조(임용) ①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전근,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해임, 면직, 파면 등(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9.12.30, 2004.3.30, 2009.3.9, 2009.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와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 등은 인사규칙 또는 일반직원인사평정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1993.4.12, 2010.1.12)

③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학교간 인사교류(전보, 파견, 겸임)시에는 교류를 필요로 하는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9.3.9, 2015.7.23)

④총장은 해당 조직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을 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5.7.23., 개정 2017.2.22.)

제84조의2(공로연수) ①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중·고등학교 일반직원 중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

이고, 정년도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자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02.19.)

②일반직원이 공로연수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25.02.19.)

제85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3.9)

제86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9)

제87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3.9)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1993.4.12.)

③이사장은 일반직원 징계에 대하여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12.3., 2016.1.1)

④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를 따른다.(신설 2015.7.23., 2015.12.3.)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법무감사실을 두며, 국장과 실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2.1.9, 2011.9.1., 2015.7.23., 2025.12.29)

②사무국에는 총무부, 재정부를 두고 법무감사실에는 법무감사팀을 두며, 부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 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6.10.30, 2009.7.24, 2011.9.1., 2015.7.23., 개정 2025.12.29)

③학원선교를 위하여 선교위원회와 공동체성경읽기운영센터를 둘 수 있으며 위원 및 위원장, 센터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9.1., 2026.05.22.)

④이사장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7.10.1, 개정 2011.9.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9.1)

⑥(삭 제 2011.9.1)

⑦(삭 제 2011.9.1)

⑧(삭 제 2011.9.1)

제 2 절 명지대학교

제90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업무분장에 따라 2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보한다.(개정 2000.5.17, 2002.3.1, 2005.7.22, 2008.2.20)

④대학교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이 2인인 경우에는 총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00.5.17, 2005.7.22, 2008.2.20)

⑤총장 및 부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1999.1.12, 2005.3.10)

⑥(삭 제 2005.7.22)

⑦(삭 제 2005.1.11)

제91조(학장, 학장보, 대학원장)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과 필요에 따라 학장보를,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1998.1.20, 2008.2.20)

②학장, 학장보 및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개정 1998.1.20)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장보는 학장을 보좌한다.(개정 1998.1.20)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총장직속으로 사회봉사단, 생명윤리위원회, 인권·감사위원회를 두고, 본부 행정조직으로 교목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처, 입학처, 학생처, 취창업지원처, 사무지원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연구처를 둔다.(개정 1998.3.24., 1999.1.12, 2002.3.1, 2005.1.11, 2006.1.5, 2008.8.26, 2009.11.2., 2010.3.1., 2017.11.30., 2018.4.24., 2019.4.30., 2021.4.22., 2023.08.29., 2026.01.27., 2026.05.22.)

②총장직속 기구 및 본부 행정조직의 실·처·단·위원장과 부실·처·위원장의 보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직속 기구

가. 사회봉사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나. 생명윤리위원회 및 인권·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4.30., 2023.08.29., 2026.01.27., 2026.05.22.)

다. (삭제 2019.4.30.)

2. 본부 행정조직

가. 교목실장은 목사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보하며 기획조정실장, 사무지원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취창업지원처장, 국제교류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4.22., 2026.01.27.)

나. 실·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실·처에 부실·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3.24, 1999.1.12, 2002.3.1, 2004.7.27, 2005.1.11, 2006.1.5, 2008.8.26, 2009.11.2, 2010.3.1.,

2014.3.1., 2017.11.30.)

③실·처·단·위원회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으로 정하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12, 개정 2007.11.23., 2017.11.30)

④(삭제 2017.11.30)

⑤(삭제 2017.11.30)

⑥(삭제 2017.11.30)

⑦(삭제 2017.11.30)

⑧(삭제 2017.11.30)

⑨(삭제 2017.11.30)

⑩(삭제 2006.1.5)

⑪(삭제 2017.11.30)

⑫총장은 특정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으로 정하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12, 개정 2001.3.10., 2017.11.30)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두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센터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2.3.1, 2002.12.30, 2005.7.22., 2014.4.9., 2016.8.25., 2017.11.30)

②대학원에는 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대학원 교학처를 두며, 그 산하에 교학팀을 둔다.(개정 2000.5.17, 2005.7.22, 2007.2.27, 2007.7.16.),(단서삭제 2008.2.20., 개정 2017.11.30.)

③교학처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교학팀장은 주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5.7.22, 2007.7.16, 2008.2.20)

④(삭제 2017.11.30)

⑤제1항 및 제2항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대학의 규정으로 정하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4.9., 개정 2017.11.30)

제94조(부속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9.2.20)

②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5.3.10, 2009.2.20)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9.2.20)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2.20)

⑤대학교에는 대학교교회를 두며, 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5조(삭 제 1999.1.12)

제95조의2(도서관) ①도서관은 자연캠퍼스에 학술정보봉사팀을 두고 인문캠퍼스에 학술정보처리팀, 학술정보봉사팀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

으로 보한다.(개정 2002.3.1, 2006.10.30, 2010.3.1)

②도서관 산하에 출판부와 대학사료실, 명지-LG한국학자료관을 두며, 출판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료실장은 대학(교)에서 역사, 문헌정보, 기록학 등 기록관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명지-LG한국학자료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본조 신설 2002.1.9](개정 2008.2.20., 2010.3.1., 2019.4.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2.20)

제95조의3(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본조 신설 2004.3.30]

제95조의4(삭 제 2017.11.30.)

제95조의5(삭 제 2017.11.30.)

제95조의6(삭 제 2017.11.30.)

제95조의7(삭 제 2017.11.30.)

제95조의8(삭 제 2017.11.30.)

제 3 절 (삭 제 2014.6.16)

제96조 내지 **99조의5**(삭 제 2014.6.16)

제 4 절 전 문 대 학

제100조(총장 등) ①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개정 2009.2.20)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개정 2009.2.20)

③전문대학의 업무분장에 따라 2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5.3.10, 2009.2.20, 2011.12.6., 2015.7.23., 2019.12.19)

④전문대학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6)

⑤총장 및 부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신설 2011.12.6)

⑥총장 궐위 시 부총장의 임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2015.7.23)

제100조의2(학부장 등) ①전문대학의 각 학부에 학부장을 둔다.

②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학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부의 교무를 관장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학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항신설 2013.8.30., 개정 2025.12.29)

[본조 신설 2010.3.1, 조명변경 2013.8.30]

제101조(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총장직속으로 대학혁신본부, 평생교육본부 및 국제교류본부를 두고 본부 행정 조직으로 교목실, 기획실, 교무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사무처를 둔다.(개정 1998.9.16, 2000.3.9, 2001.9.11, 2002.3.1, 2005.3.10, 2013.8.30., 2015.12.3., 2018.6.25., 2018.12.18., 2019.12.19., 2025.6.27., 2025.12.29.)

②교목실장은 목사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보하며, 기획실장, 사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대학혁신본부장, 평생교육본부장 및 국제교류본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9.16, 2000.3.9, 2001.9.11, 2002.3.1, 2005.3.10, 2007.11.23, 2011.11.30, 2013.8.30, 2015.4.7., 2015.12.3., 2018.6.25., 2018.12.18., 2019.12.19., 2025.6.27., 2025.12.29.)

③실·처·단장·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실·처·단·본부에 부실·처·단·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처·단·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3.8.30., 2019.12.19)

④실·처·단·본부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으로 정하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2.30, 2007.11.23, 2010.3.1, 2013.8.30., 2015.12.3., 2017.2.22., 2017.11.30., 2025.12.29.)

⑤(개정 1998.9.16, 2005.3.10, 2007.11.23, 2008.2.20, 2010.3.1, 2013.8.30., 2015.12.3., 삭제 2017.2.22)

⑥(개정 2015.12.3., 삭제 2017.2.22)

⑦(개정 1998.9.16, 2005.3.10, 2007.11.23, 2010.3.1, 2013.8.30., 2015.12.3., 삭제 2017.2.22)

⑧(개정 1998.9.16, 2006.10.30, 2007.11.23, 2010.3.1, 2013.8.30., 2015.12.3., 삭제 2017.2.22)

⑨개정 2007.11.23, 2008.2.20, 2010.3.1., 2013.8.30., 삭제 2017.2.22)

⑩(본조 신설 1996.3.1., 2013.8.30., 삭제 2017.2.22.)

⑪총장은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으로 정하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9.)

제102조(부속기관) ①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9.2.20)

②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0.8.27)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9.2.20)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2.20)

제103조(학술정보원) (조명 변경 2018.6.25.) ①원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98.1.20,

2001.3.10, 2010.3.1., 2013.8.30., 2017.2.22., 2017.11.30., 2018.6.25., 202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①전문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본조 신설 2004.3.30, 개정 2009.2.20]

제 5 절 고 등 학 교

제104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2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5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2.26., 2007.11.23., 2023.08.29.)

제106조(도서관) 도서관에는 수서와 도서열람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교원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01.5.7)

제 6 절 중 학 교

제107조(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8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2.26, 2003.7.2, 2007.2.27, 2007.11.23)

제 7 절 초 등 학 교(명칭변경 1996.3.1)

제109조(교장 등)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0조(하부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2.26, 2003.7.2, 2007.2.27, 2007.11.23)

제 8 절 유 치 원

제111조(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개정 2012.12.17)

③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17)

④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3)

제 9 절 정 원

제112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3-2,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과 같다.

제 8 장 보 칙

제113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1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5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유 진 원	1897. 2.28	4년	서울 중구 장충동1가 89-1
이 사	유 상 근	1922. 2.20	"	서울 중구 신당동 366-7
(설립자)				
이 사	김 영 기	1901. 9.14	"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47-1
"	신 두 영	1918. 8.21	"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139-5
"	조 정 구	1916.10.29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31
"	유 치 웅	1901. 2.23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10-46
감 사	유 용 근	1929. 9.16	2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47

제116조(정관효력) 본 정관은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9 장 청렴의무 등

제117조(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신설 2022.06.29.개정2022.12.27.)

제118조(사학기관 행동강령) ①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17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신설 2022.06.29.)

②제117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2.06.29.개정2022.12.27.)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명지고등학교 일반직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6급(주사) 1인, 8급(서기) 1인, 9급(부서기) 1인, 기능직 7급 2인, 8급 1인, 9급 2인, 기술직 8급 1인, 명지여자고등학교 일반직원 4급(참사) 1인, 8급(서기) 3인, 9급(부서기) 1인, 기능직 7급 2인, 8급 1인, 9급 1인은 퇴직, 전보, 승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06.23.)

②변경된 정원에 불구하고 현재 재직중인 고용원(경노무 포함)이 기능직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에 해당되는 기능직 정원(수)를 고용원(경노무 포함)정원(수)로 본다.

제4조(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명지여자중학교와 명지여자고등학교 소속교원 및 일반직원은 각각 명지중학교와 명지고등학교의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본다.

③(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으로 감축되는 명지중학교 일반직원 2명(9급(부서기) 1명, 기능직10급 1명)과 명지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6명(8급(서기) 1명, 기능직7급 3명, 8급 1명, 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명지중학교와 명지고등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06.23.)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하고, 이 개정 정관 시행일 이전에 교수와 부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일반행정직, 기술직) 5급 이상 직원 및 기능직 직원중 종전의 제50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9년 2월 28일인자와 1999년 8월 31일인자는 해당일자에, 2000년 2월 28일인자는 1999년 8월 31일에, 2000년 8월 31일인자는 1999년 11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며, 일반직(일반행정직, 기술직) 6급 이하 직원중 종전의 제50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9년 2월 28일인자부터 2000년 8월 31일인자는 해당일자에, 2001년 2월 28일인자는 2000년 8월 31일에, 2001년 8월 31일인자는 2000년 11월 30일에, 2002년 2월 28일인자부터 2004년 8월 31일인자까지는 2001년 2월 28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43조 제2항 및 제44조 제3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제3항 및 제99조 제1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감사 및 학교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 및 학교장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및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③(평의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제35조의3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단, 학생평의원은 해당 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에 규정된 당해 총학생회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의2, 제95조의 4, 제101조는 2008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97조, 제97조의2, 별표4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6항 개정, 제97조 제6항, 제97조의2 제1항)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97조 제1항, 제2항, 제8항)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7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표2)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8조 제3항)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7항 및 제8항, 제96조 제1항 및 제3항, 제99조의2, 제99조의3, 제99조의4)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97조 제5항, 제7항 및 제8항)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44조 제1항 및 제3항, 제46조 제2항, 제53조 제1항)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내지 별표8의 기능직 정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직 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직 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

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한다.(개정 2020.06.23.)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96조 제4항, 제100조 제3항 내지 제5항)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별표 3)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35조의8, 제35조의9, 제35조의13, 제35조의14)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95조의5 제1항, 제95조의6)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32조 제3항, 제44조 제1항 7호, 제4항)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3항 제1호 다목 및 제4항 제4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제5조는 2012년 7월 27일부터 적용한다.(제5조, 제43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4항 제4호, 제43조의4 제1항 제3호, 제50조 제3항, 제66조의2)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97조 제1항, 제2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99조의4, 제99조의5)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37조 제2호, 제38조 제2호, 제111조 제2항, 제3항)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5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별표3) (별표 1)(개정 1999.2.26, 2005.5.20, 2006.10.30, 2007.2.27, 2009.3.9, 2011.11.30)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96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9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제9항, 제97조의2 제1항, 제2항)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50조의 4 제1항 제1호, 제9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00조의2 제4항, 제101조의 제1항 내지 제10항, 제103조 제1항)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2항, 제92조의7, 제97조 제8항, 제97조의 2 제1항, 별표5, 별표6, 별표7)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6항, 제8항, 제9항, 제93조 제1항, 제4항, 제5항)

부 칙

이 정관은 관동대학교 폐지일(2014.8.31.)로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2호, 제24조의3 제2항, 제37조 제2호, 제38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4호, 제96조 내지 제99조의5)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95조의7 제2항, 제95조의8)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4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0조의4 제1항 제2호, 제101조 제2항)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제6항)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 제8항 · 제9항, 제43조 제7항, 제44조제1항제1호 · 제6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10호, 제50조의4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 · 제2항 · 제3항, 제54조제1항, 제60조, 제66조의2, 제84조제3항 · 제4항, 제88조제3항, 제89조제1항 · 제2항, 제100조제3항 · 제6항)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3조제1항, 제65조의2, 제88조제3항, 제92조제6항제2호, 제95조의8제1항, 제101조제1항 · 제2항 · 제4항 내지 제8항)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8조 제3항)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 제1항, 제95조의6제1항,제2항)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 제6항·제7항·제8항·제9항)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48조 제2항·제4항·제7항, 제48조의2, 제59조 제2항·제3항·제4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2, 제93조 제1항 다만,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2항5호, 제43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제9항·제11항, 제43조의4제1항, 제44조제4항·제1항14호·제4항, 제48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제48조의2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1호·제2항1호·제3항, 제63조의3, 제92조 제8항·제9항)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48조제8항, 제48조의3, 제84조제4항, 제101조제4항내지제10항, 제103조제1항)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8조제1항내지제2항, 제92조제1항내지제9항 및 제11항내지제13항, 제93조제1항내지제2항 및 제4항내지제5항, 제95조의4, 제95조의5, 제95조의6, 제95조의7, 제95조의8, 제101조제4항, 제103조제1항)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1항 및 제2항)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 제1항, 제35조의3 제1항, 제101조 제1항·제2항, 제103조 제1항)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35조의3 제1항,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95조의2 제2항)

부 칙

①이 정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3조 제4항과 제12항, 제52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사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45조 제1호 및 제47조 제1항 제1호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제45조 제1호 및 제6호의2, 제47조 제1항 제1호)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제50조의4 제1항 제1호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50조의4 제1항, 제60조, 제65조, 제65조의2, 제100조 제3항, 제101조 제1항·제2항·제3항)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 제1항, 부칙 제3조제1항(1991.02.12.), 부칙 제3항(1997.03.01.), 부칙 제2조(2011.11.30.),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8)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102조 제2항)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33조의2제1항, 제92조제1항, 제2항제2호, 별표2, 별표4)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 제1항)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35조의11제1항, 제83조제3항, 제92조제1항·제2항, 제101조 제1항·제3항, 별표1·별표2·별표4·별표8)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5조제9항, 제35조의7, 제35조의8제1항제3항, 제35조의14제1항제2항, 제43조제4항제11항, 제51조, 제52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2조, 제65조제3항제5항, 제66조의2, 제9장, 별표6)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제1항, 제43조제4항, 제117조, 제118조제2항, [별표5])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66조의2, 제92조제1항·제2항, 제105조)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84조의2)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101조, 별표2, 별표4)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50조의4 제2항)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43조의4 제1항 · 제3항)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89조의 제1항 · 제2항, 제100조의2 제4항, 제101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11항, 제103조 제1항)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1항 · 제2항)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1조의2, 제43조 제2항, 제89조 제3항, 제92조 제1항 · 제2항)

[별표 1](개정 1999.2.26, 2005.5.20, 2006.10.30, 2007.2.27., 2009.3.9., 2020.06.23.)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9명
일반직 계	14명
2 급(참 여)	1명
3 급(부참여)	2명
4 급(참 사)	2명
5 급(부참사)	2명
6 급(주 사)	2명
7 급(부주사)	2명
8 급(서 기)	2명
9 급(부서기)	1명
기술직 계	5명
5 급(부참사)	명
6 급(주 사)	1명
7 급(부주사)	1명
8 급(서 기)	1명
9 급(부서기)	2명

[별표 2](개정 1998.1.20, 1999.1.12, 1999.2.26, 2000.3.9, 2001.3.10, 2002.3.1, 2002.7.2, 2004.3.30, 2006.6.16, 2007.2.27, 2009.3.9, 2010.3.1, 2011.3.1., 2011.11.30., 2020.06.23., 2021.04.22., 2025.06.27)

명지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33명
일반직 계	206명
2 급(참 여)	2명
3 급(부참여)	9명
4 급(참 사)	21명
5 급(부참사)	42명
6 급(주 사)	29명
7 급(부주사)	26명
8 급(서 기)	31명
9 급(부서기)	46명
별정직 계	1명
(예비군연대)	
7 급(부주사)	1명
기술직 계	26명
(전기,난방,운전,전산,교환,원예,사역,방호)	
5 급(부참사)	2명
6 급(주 사)	10명
7 급(부주사)	6명
8 급(서 기)	5명
9 급(부서기)	3명

[별표 3](개정 1999.1.12, 1999.2.26, 2000.3.9, 2001.3.10, 2006.6.16, 2007.2.27, 2009.3.9, 2010.3.1, 2011.11.30, 2011.12.19, 2013.2.18)(삭 제 2014.6.16)

[별표 3-2](신설 1995.3.23)(삭제 2011.11.30)

[별표 4](개정 1998.3.24, 1998.9.16, 1999.2.26, 2000.3.9, 2001.3.10, 2001.5.7, 2006.6.16, 2007.2.27, 2009.3.9, 2010.3.1, 2010.4.26., 2011.11.30., 2020.06.23., 2021.04.22., 2025.06.27)

명지전문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06명
일반직 계	101명
2 급(참 여)	1명
3 급(부참여)	4명
4 급(참 사)	8명
5 급(부참사)	21명
6 급(주 사)	26명
7 급(부주사)	10명
8 급(서 기)	17명
9 급(부서기)	14명
기술직 계	5명
[운전, 전기, 전산, 영사, 인쇄, 난방(수도), 목공, 교환, 방호, 사역]	
5 급(부참사)	1명
6 급(주 사)	1명
7 급(부주사)	1명
8 급(서 기)	1명
9 급(부서기)	1명

[별표 5](개정 2001.3.10, 2009.3.9, 2011.11.30., 2014.3.1., 2022.12.27.)

명지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0명
5 급(부참사)	1명
6 급(주 사)	명
7 급(부주사)	3명
8 급(서 기)	명
9 급(부서기)	6명

[별표 6](개정 2001.3.10, 2009.3.9, 2011.11.30., 2014.3.1., 2022.06.29.)

명지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7명
5 급(부참사)	명
6 급(주 사)	1명
7 급(부주사)	명
8 급(서 기)	2명
9 급(부서기)	4명

[별표 7](개정 2000.3.9, 2009.3.9, 2011.11.30, 2014.3.1)

명지초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4명
6 급(주 사)	1명
7 급(부주사)	4명
8 급(서 기)	3명
9 급(부서기)	6명

[별표 8](개정 1999.1.12, 2009.3.9., 2011.11.30., 2020.06.23.)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명
일반직 계	1명
7 급(부주사)	1명
기능직 (사역)	1명
5 급(부참사)	명
6 급(주 사)	명
7 급(부주사)	명
8 급(서 기)	명
9 급(부서기)	1명